2.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성동구 건축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02)3707-8488), 성동구 건축과(☎ 02)2286-564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0호
용두 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은 본 건 정비계획 및 용도지역변경 결정도면으로 갈음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율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기정	A	7	용두동	753-9	5.6	190	12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A	7	용두동	753-9	5.3	190	12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두 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신 규	용두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	53,149.5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3,149.50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9,606.65	18.08	
	도 로	6,808.12	12.81	신설, 확폭
	소공원	1,917.92	3.61	신설
	경관녹지	880.61	1.66	신설
택 지	택 지1	39,033.65	73.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
	택 지2	4,229.20	7.96	공동주택(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
	택 지3	280.00	0.52	노유자시설 부지(어린이집)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8	2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90	안암동 광장	하왕십리동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변경	대로	3	8	25~ 2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90	안암동 광장	하왕십리동			일부구간 확폭 (B=3m)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24	용두동 193-42	용두동 218-1		건고시768호 ('63.1.24)	
변경	중로	2	5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6	용두동 193-41	용두동 187-56			기존도로 확폭 (B=7m)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0	중로2-5	용두동 751-1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0	중로2-5	용두동 751-1			기존도로 확폭 (B=7m)
기정	중로	2	-	6~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0	용두동 735-3	용두동 762-21			
변경	중로	2	2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0	용두동 735-3	용두동 762-2			기존도로 확폭 (B=9m)
신설	중로	2	3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3	용두동 756-6	용두동 763-13			
기정	중로	2	-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63	용두동 150-35	용두동 756-13			
변경	중로	2	4	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63	용두동 150-35	용두동 756-13			일부구간 확폭 (B=3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9	용두동 725-5	용두동 766-2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8	용두동 151-1	용두동 199-4			
폐지	소로	3	10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4	용두동 195	용두동 187-29		건고시768호 (63.1.24)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공 원	소공원	용두동 765-12일대	-	증)1,917.92	1,917.92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녹 지	경관녹지	용두동 193-56일대	-	증)880.61	880.61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용두 제6주택 재개발구역	53,149.5	용두동 753-9번지 일대	385	-	-	385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신설	택지1	39,033.65	용두동 199-7 일대	131,300 (지하층포함)	분양아파트	25%	225.6%	73m (평균15.97층)
	택지2	4,229.20	용두동 735-18 일대	15,900 (지하층포함)	임대아파트	25%	220.7%	41m (평균12.0층)
	택지3	280.00	용두동 763-13 일대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관계규정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930세대(100%) - 분양주택 85㎡이하 : 800세대(86.02%) 85㎡초과 : 130세대(13.98%) - 임대주택 164세대(전체세대수의 17.63%) 40㎡이하 : 80세대(임대주택의 48.8%) 40㎡~50㎡이하 : 66세대(임대주택의 40.2%) 50㎡~60㎡이하 : 18세대(임대주택의 11.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대로3류(무학로, 폭25m)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택지내 폭3m 건축한계선 지정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관리처분계획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존 947세대 계획 930세대 (감 17세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용도지역의 세분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3,149.5	감) 53,149.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149.5	53,149.5	
총 계	53,149.5	-	53,149.5	

6)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사항

- T자형, ㄱ자형 건축물의 경우 일조권 불량,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계획을 개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건축물의 높이하향, 주거동 유형 개선, 건축계획은 임대아파트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되도록 개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구역 북측 741번지 및 750번지 일대는 구역계에 포함을 권장함
- 중로2-3(폭 15m)는 안암로까지 동일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도시계획사업시행)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497) 및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관악구 신림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악구 신림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악구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